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856
----------	------

2025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5.26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5. 5.29

4. 상정일자 :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23)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5. 6.26)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¹⁾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 의안번호 제2843호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4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한 제안설명으로,
- 14개 변경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회수액을 2025회계연도 예치금으로 증감 반영하는 등 재무활동을 3,855억원 증액 하였으며
- 도시재생기금, 공공시설등설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정책사업비를 1,663억원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를 3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자 함

1) 일괄 제안설명에 따라 개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차이가 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5년도 수입계획 변경을 통해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증액(증 1,625백만원) 및 보조금 반환수입 33백만원, 기타 이자수입 519천원을 수입계획에 신규반영하고자 함

나. 2025년도 지출계획 변경을 통해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조정(증 1,018백만원) 및 신규사업을(① 해외도시 물품나눔 사업 50백만원, ② 스마트시티 국제개발협력 250백만원) 편성하고자 함.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역

○ 수입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5년 당초 계획(A)	'25년 1차 변경	'25년 2차 변경(B)	증감(B-A) (증감률)
합 계	6,252,894	6,252,894	7,911,176	1,658,282 (26.52%)
216 이자수입	216,487	216,487	217,006	519 (0.24%)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16,487	216,487	216,487	-
216-03 기타이자수입	-	-	519	519
223 보조금반환수입	-	-	32,848	32,848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	8,474	8,474
223-03 위탁비반환수입	-	-	24,374	24,374
714 예치금 회수	1,472,185	1,472,185	3,097,100	1,624,915 (110.37%)
714-01 예치금회수	1,472,185	1,472,185	3,097,100	1,624,915
721 전입금	4,564,222	4,564,222	4,564,222	-
721-03 기타회계전입금	4,564,222	4,564,222	4,564,222	-

○ 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정책/단위/세부)		'25년 당초 계획(A)	1차 변경	2차 변경 (B)	증감(B-A) (증감률)
합 계		6,252,894	6,252,894	7,911,176	1,658,282 (26.52%)
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		4,541,834	4,881,834	5,181,834	640,000 (14.09%)
외국지방정부 공무원교육 및 연수		2,618,334	2,818,334	2,818,334	200,000 (7.64%)
시책	사 립 과 대	967,360	947,126	947,126	△20,234
공초	청 무 연 원	426,522	426,522	426,522	-
도초	시청 철교 도	68,525	68,525	68,525	-
시책	고 립 위 과 대	290,777	311,011	311,011	20,234
유	학 생 유 치	865,150	905,150	905,150	40,000
서	네 트 워 크 인 재 프 로 유 치	-	160,000	160,000	160,000
외국 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		1,523,500	1,663,500	1,963,500	440,000 (28.88%)
소인	프 방 라 안 구 전	152,500	152,500	152,500	-
서	첼 올 형 린 O D A	800,000	940,000	940,000	140,000
민 간 국 제 개 발 협 력		571,000	571,000	571,000	-
해	물 외 품 도 나 시	-	-	50,000	50,000
스	국 제 개 트 발 시 협	-	-	250,000	250,000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400,000	400,000	400,000	-
재	해 구 호	400,000	400,000	400,000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5,000	5,000	5,000	-
재무활동(예치금)		1,706,060	1,366,060	2,724,342	1,018,282 (59.67%)

※ 1차 지출계획 변경 : 정책사업비(비용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340백만원 증액에 따른 예치금 감액

3. 검토의견²⁾

- 서울특별시는 지난 '05년도부터 ①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와 ②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를 조성·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을 운용한 바, 지난 '24년 7월, 별도 조례를 신설하여³⁾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가 16억 2,400만원 증가하고, 당초 수입계획되지 않은 **보조금반환수입** 3,200만원을 수입계획함에 따라
 - 수입계획과 연동되는 지출계획도 정책사업인 **재무활동(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에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재원중 10억 1,800만원을 증액하여 예치하고, 다른 정책사업인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이 지출계획한 사업내용에 6억 4,000만원을 증·감하여 지출계획 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⁴⁾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이와 연동된 지출계획에도 여유자금 예치와 다른 정책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하여 지출계획한 것으로

2) ■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을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pm 0.1\%$ 범위내) 차이 있음

3)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 2024. 7.15)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은 당초 지출계획(17억 600만원)보다 59.7%, 10억 1,8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그러나 다른 정책사업인 **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의 경우, 2개 세부사업의 개별 사업내용을 감액, 증액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당초 지출계획(45억 4,100만원)보다 14.1%, 6억 4,000만원 증액되는 것이기에 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된 내용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다른 정책사업의 세부사업에 일부 증액하여 지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운용중인 동 기금에 대한 수·지 균형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동 기금의 용도⁵⁾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5)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경제발전에 필요한 개발조사사업 및 사업계획수립에 대한 자금지원
2. 외국도시의 재해·재난에 대한 구호사업경비의 지원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가. 소위원회

○ 위원구성 :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11명)

- 위원장 : 최민규(도시안전건설)

- 부위원장 : 김경훈(교육), 정준호(교통)

- 위원 : 서호연(행정자치), 홍국표(기획경제)

이용균(환경수자원), 아이수루(문화체육관광)

도문열(보건복지), 봉양순(도시안전건설)

김종길(주택공간), 김원태(도시계획균형)

※ '25년도 본예산 심사시 구성된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

나.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시 : 2025. 6.26(목) 12:00~13:00

-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내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

VII. 부대의결 : 「해당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25. 6.26)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856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5년도 수입계획 변경을 통해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증액(증 1,625백만원) 및 보조금 반환수입 33백만원, 기타 이자수입 519천원을 수입계획에 신규반영하고자 함

나. 2025년도 지출계획 변경을 통해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조정(증 1,018백만원) 및 신규사업을(① 해외도시 물품나눔 사업 50백만원, ② 스마트시티 국제개발협력 250백만원) 편성하고자 함.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역

○ 수입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5년 당초 계획(A)	'25년 1차 변경	'25년 2차 변경(B)	증감(B-A) (증감률)
합 계	6,252,894	6,252,894	7,911,176	1,658,282 (26.52%)
216 이자수입	216,487	216,487	217,006	519 (0.24%)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16,487	216,487	216,487	-
216-03 기타이자수입	-	-	519	519
223 보조금반환수입	-	-	32,848	32,848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	8,474	8,474
223-03 위탁비반환수입	-	-	24,374	24,374
714 예치금 회수	1,472,185	1,472,185	3,097,100	1,624,915 (110.37%)
714-01 예치금회수	1,472,185	1,472,185	3,097,100	1,624,915
721 전입금	4,564,222	4,564,222	4,564,222	-
721-03 기타회계전입금	4,564,222	4,564,222	4,564,222	-

○ 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정책/단위/세부)	'25년 당초 계획(A)	1차 변경	2차 변경 (B)	증감(B-A) (증감률)
합 계	6,252,894	6,252,894	7,911,176	1,658,282 (26.52%)
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	4,541,834	4,881,834	5,181,834	640,000 (14.09%)
외국지방정부 공무원교육 및 연수	2,618,334	2,818,334	2,818,334	200,000 (7.64%)
시책사업과대정	967,360	947,126	947,126	△20,234
공조청무연원수	426,522	426,522	426,522	-
도초시청철교도육	68,525	68,525	68,525	-
시책고립위과대정	290,777	311,011	311,011	20,234
유학생유치	865,150	905,150	905,150	40,000
서네트워킹프로모션	-	160,000	160,000	160,000
외국 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	1,523,500	1,663,500	1,963,500	440,000 (28.88%)
소인프라연구전축	152,500	152,500	152,500	-
서책올림O D A지	800,000	940,000	940,000	140,000
민간국제개발협력	571,000	571,000	571,000	-
해물외품도나시눔	-	-	50,000	50,000
스국마트발시협티력	-	-	250,000	250,000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400,000	400,000	400,000	-
재해구호	400,000	400,000	400,000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5,000	5,000	5,000	-
재무활동(예치금)	1,706,060	1,366,060	2,724,342	1,018,282 (59.67%)

※ 1차 지출계획 변경 : 정책사업비(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 340백만원 증액에 따른 예치금 감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오세희 (☎ 2133-5278)